

##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( 약칭: 산업기술혁신법 )

[시행 2025. 1. 21.] [법률 제20695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]

- 제15조의2(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)**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(이하 “인증신기술”이라 한다)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(이하 “신기술적용제품”이라 한다)으로 확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·확인 기준·대상·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[본조신설 2011. 5. 24.]

##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
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7호, 2024. 7. 2., 타법개정]

- 제18조(신기술 인증의 절차)**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23., 2013. 3. 23.>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(이하 “신기술 인증심사”라 한다)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23., 2013. 3. 23.>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23., 2013. 3. 23.>
1. 기술명
  2. 기관명 및 대표자
  3. 인증예정기간
  4.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
-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11. 23., 2013. 3. 23., 2017. 9. 15.>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 <신설 2011. 11. 23., 2013. 3. 23.>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23., 2013. 3. 23.>
-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23., 2013. 3. 23.>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1. 11. 23., 2013. 3. 23.>
- [전문개정 2009. 4. 30.]  
[제목개정 2011. 11. 23.]

- 제18조의3(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)**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

술로 한다.

1.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

2.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

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
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1. 11. 23.]

##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 1. 2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, 2022. 1. 21., 타법개정]

**제2조(신기술 인증 신청)**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25., 2013. 3. 23., 2014. 8. 6., 2017. 1. 26., 2017. 9. 15., 2021. 1. 18.>

1.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(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)

2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

3.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

4.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. <개정 2011. 11. 25., 2017. 9. 15.>

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 <신설 2011. 11. 25.>

[전문개정 2009. 4. 30.]

[제목개정 2011. 11. 25.]

**제2조의3(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)**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15.>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. <개정 2017. 9. 15.>

[본조신설 2011. 11. 25.]